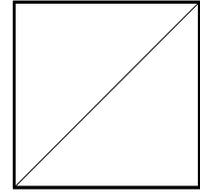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6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9. 28. (제 17 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9. 28.

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제15조,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상응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감사인 군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하며 하향재지정 제도를 일부 제한하되 동일군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 비상장사를 우선 지정

②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제24조, 제25조)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이 구두요청한 자료는 사후적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의무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대리인이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앞당겨 정하도록 시행세칙에 위임근거 마련하고 복사도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2022.6.22. ~ 8.2 규정변경예고

2022.7.18. ~ 8.26 규정변경예고

마.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022.9.21.) 심의필

바. 제17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9.22.) 심의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제3호 중 “제4호다목”을 “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4 및 별표 4의2”로 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3.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군·다군·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 각 호

다. 영 제14조제6항제1호

5.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리집행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24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열람을”을 “열람·복사를“으로 하고, ”한 이후에”를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열람을”을 “열람·복사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열람을”을 “열람·복사를“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 점수 관련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적용하되, 최초 차감시점은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일반 회계법인에 대한 우선 지정 관련 적용례) 별표 4의2 개정규정 중 제2호가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제2호다목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군 분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 기준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을 2023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나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2. 다군의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00%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생략)</p> <p>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영 제16조제2항제3호: 별표 4 제4호다목의 표(表)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p> <p>4. (생략)</p> <p>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p> <p>가. (생략)</p> <p>나.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취소. 이 경우 <u>별표 3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지정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회사를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u></p>	<p>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em;">-- <u>제4호다목</u>-----</p> <p>-----</p> <p>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 style="padding-left: 2em;">----- <후단 삭제></p>

은 회사 수"에 포함한다.

다. (생략)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생략)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
사인이 별표 4 제2호의 표에
서 가군이 아닌 경우에 회사
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⑩ -----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
가 상향 재지정[별표 4 제2호
에 따른 군 분류 기준 상 나
군·다군·라군에 속하는 회계
법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본
인이 속한 기업군(별표 4 제1
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높은 감
사인군(별표 4 제2호에 따른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가.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나군인 경우: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나.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다군인 경우: 가군 또는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다.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라군인 경우: 가군, 나군 또는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감사인이 마군인 경우: 가군, 나군, 다군 또는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4. 회사가 속하는 군이 별표4 제1호의 표에서 가군이 아닌 경우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계법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한다)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같다)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향 재지정(회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군보다 높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 보다 낮은 감사인군에 속하는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가.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나.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나군 또는 다군
에 속하는 회계법인

다.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나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라.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나군, 다군 또
는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
인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나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다군 또는 라군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 각 호
다. 영 제14조제6항제1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에 속하는 회계법인

바.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다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라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삭 제>

사.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가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나군, 다군, 라
군 또는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삭 제>

아.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나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다군, 라군 또
는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
인

<삭 제>

자.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다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라군 또는 마군
에 속하는 회계법인

<삭 제>

차.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
사가 회계법인 라군에 속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
은 경우 : 마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삭 제>

<신 설>

5. ~ 7. (생략)

⑥ 영 제17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 ⑨ (생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⑤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이 조

5. 가군(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군을 말한다)이 아닌 회사가 동일군 재지정(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신청한 경우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⑥ -----

----- 제8호-----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집행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피조사자에게 구두(口頭)로 알린 경우 알린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사과정에 참여한 후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단서 신설>

5. (생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를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원회”라 한다)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 제5항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다만,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⑦ ----- 제5항 -----
----- 제6항 -----

⑧ ----- 제7항 -----

외에 감리등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피조사자는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 및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제출자료”라 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리등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리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① -----

----- 열람·복사를 -----

----- 실시하기 전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날부터 -----.

② ----- 열람·복사를 -----.

1. 제24조제5항 -----

<p>2.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이하 "고발등"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문답서에 대한 <u>열람</u>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p>	<p>2. ----- ----- ----- ----- ----- <u>열람·복사</u>를 ----- -----</p>
---	---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감사인지정 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

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20	115	110	100	80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 1) 100점 환산 시 85점 이상인 경우: 10%

2)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5%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3%	6%	9%	12%	15%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 지정 받은 것으로 간주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까지	5천억원 미만
가중치	3배	2배	1배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비고

1.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한다.

- 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 바.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1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받는 회사(이하 “미선임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 = \frac{\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 회사 수에 별표 3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text{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frac{\text{해당 회계법인 직전년도 지정회사 수}^*}{\text{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의 총 지정회사 수}^*} \times 100$$

* 지정회사 수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동일 회사를 2회 이상 지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미선임 회사로 지정 받은 회사 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4)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가중시 최대	I	II	III	IV	V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 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60점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 3)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

[별표 4의2]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및 미선임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를 우선 적용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 회계법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에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은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나.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받

행 전 심리를 말한다) 대상에 포함할 것

다.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없을 것.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아니한 일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의 직전년도 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일반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일반 회계법인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1개사를 추가로 우선 지정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일반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년 10월

1일부터 1개 회사씩 지정한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지한다.

6.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하는 회사 수는 매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의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 받지 않은 회사는 별표 4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8. 이 별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제15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지정한다.

9.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라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회사 수 이상인 일반 회계법인에는 추가로 회사를 우선 지정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에 이 별표에 따른 감사인 지정 방법에 관하여 별표 4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기업회계팀
연락처	02-2100-2693